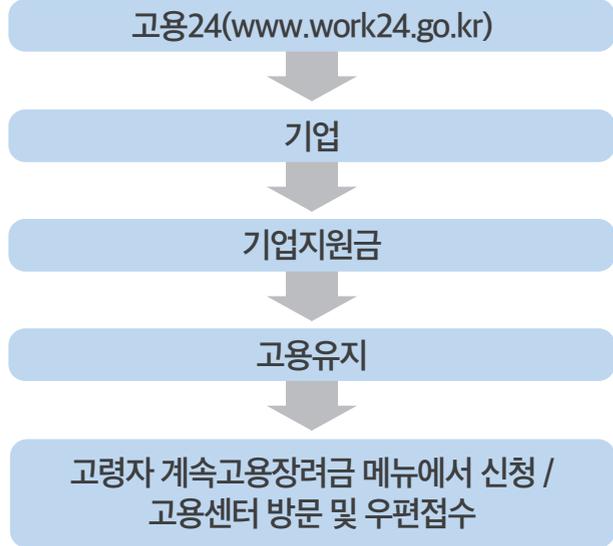


#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



자세한 사항은 **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**을  
참고하세요.  
(고용노동부-정책자료실)

■ 문의처: 1350(고객상담센터)  
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(기업지원부서)

■ 관할 고용센터 찾는법

[www.workplus.go.kr](http://www.workplus.go.kr)

전국 고용복지+센터 목록    지역(시/도)    지역(시/군/구)    검색어 입력    🔍    전체목록

시도 및 시군구, 센터명, 관할지역,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합니다.  
검색어 예시: '서울' 또는 'OO구' 또는 '고용' 또는 '02' (전화번호 일부)

##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

기관명	대표번호	기관명	대표번호
서울고용복지+센터	02)2004-7301	대구고용복지+센터	053)667-6000
서초고용복지+센터	02)580-4900	대구서부고용복지+센터	053)605-6500
서울강남고용복지+센터	02)3468-4794	칠곡고용복지+센터	054)970-1919
서울동부고용복지+센터	02)2142-8924	대구달성고용복지+센터	053)605-9510
서울서부고용복지+센터	02)2077-6000	포항고용복지+센터	054)280-3000
서울남부고용복지+센터	02)2639-2300	경주고용복지+센터	054)778-2500
서울북부고용복지+센터	02)2171-1700	구미고용복지+센터	054)440-3300
서울관악고용복지+센터	02)3282-9200	영주고용복지+센터	054)639-1122
인천고용복지+센터	032)460-4701	문경고용복지+센터	054)559-8200
인천북부고용복지+센터	032)540-5641	안동고용복지+센터	054)851-8061
인천서부고용복지+센터	032)540-2001	광주고용복지+센터	062)609-8500
부천고용복지+센터	032)320-8900	광주광산고용복지+센터	062)960-3200
김포고용복지+센터	031)999-0900	전주고용복지+센터	063)270-9100
의정부고용복지+센터	031)828-0900	정읍고용복지+센터	063)530-7500
고양고용복지+센터	031)920-3937	남원고용복지+센터	063)630-3900
수원고용복지+센터	031)231-7864	익산고용복지+센터	063)840-6500
성남고용복지+센터	031)739-3177	김제고용복지+센터	063)540-8400
안양고용복지+센터	031)463-0700	군산고용복지+센터	063)450-0600
안산고용복지+센터	031)412-6600	부안고용복지+센터	063)580-0501
평택고용복지+센터	031)646-1205	목포고용복지+센터	061)280-0500
춘천고용복지+센터	033)250-1900	해남고용복지+센터	061)530-2900
강릉고용복지+센터	033)610-1919	순천고용복지+센터	061)720-9114
속초고용복지+센터	033)630-1919	여수고용복지+센터	061)650-0155
원주고용복지+센터	033)769-0900	광양고용복지+센터	061)798-1900
태백고용복지+센터	033)552-8605	대전고용복지+센터	042)480-6000
삼척고용복지+센터	033)570-1900	공주고용복지+센터	041)851-8501
영월고용복지+센터	033)371-6260	논산고용복지+센터	041)731-8600
부산고용복지+센터	051)860-1919	세종고용복지+센터	044)865-3219
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	051)760-7100	청주고용복지+센터	043)230-6700
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	051)330-9900	천안고용복지+센터	041)620-7400
창원고용복지+센터	055)239-0900	충주고용복지+센터	043)850-4000
울산고용복지+센터	052)228-1919	제천고용복지+센터	043)640-9310
김해고용복지+센터	055)330-6400	서산고용복지+센터	041)669-5600
양산고용복지+센터	055)379-2400	보령고용복지+센터	041)930-6200
진주고용복지+센터	055)753-9090	제주고용복지+센터	064)710-4462
통영고용복지+센터	055)650-1800		

##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정년 퇴직자를  
계속 고용할 경우  
**1,080만원을**  
지원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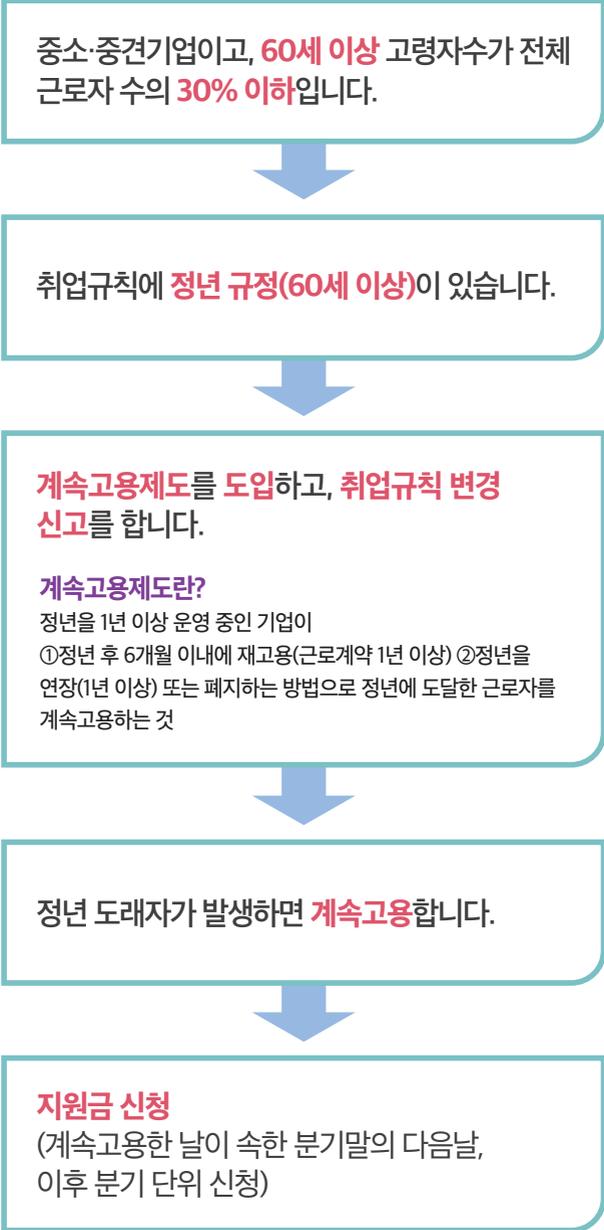
#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.

##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?

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 
① 재고용하거나 ②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 
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 
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
##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, 이렇게 준비하세요



중소·중견기업이고, **60세 이상** 고령자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**30% 이하**입니다.

취업규칙에 **정년 규정(60세 이상)**이 있습니다.

**계속고용제도를 도입**하고, **취업규칙 변경 신청**을 합니다.

### 계속고용제도란?

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 
①정년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(근로계약 1년 이상) ②정년을 연장(1년 이상) 또는 폐지하는 방법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

정년 도래자가 발생하면 **계속고용**합니다.

**지원금 신청**  
(계속고용한 날이 속한 분기말의 다음날, 이후 분기 단위 신청)



### 어떤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- ①정년을 1년 이상 운영,
- ②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(재고용, 정년 연장·폐지) 도입('19.1.1.이후),
- ③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% 이하, ④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,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



### 어떤 근로자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-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,
-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,
- ③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,
- ④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



###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(月 30만원)  
최대 3년간 지원

\*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